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18 - 55 - 467호

안전명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심인 세종텔레콤(주) (사업자등록번호 : 123 - 81 - 2875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대표이사 김형진

의결연월일 2018. 10. 12.

주 문

1. 피심인은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호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관련 서비스인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가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 또는 고지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 x 10cm 또는 5단 x 9cm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하고,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0,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사실

세종텔레콤(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허가받은 사업자로서 시외·국제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VoIP),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이동전화서비스 제외)은



아래와 같다.

<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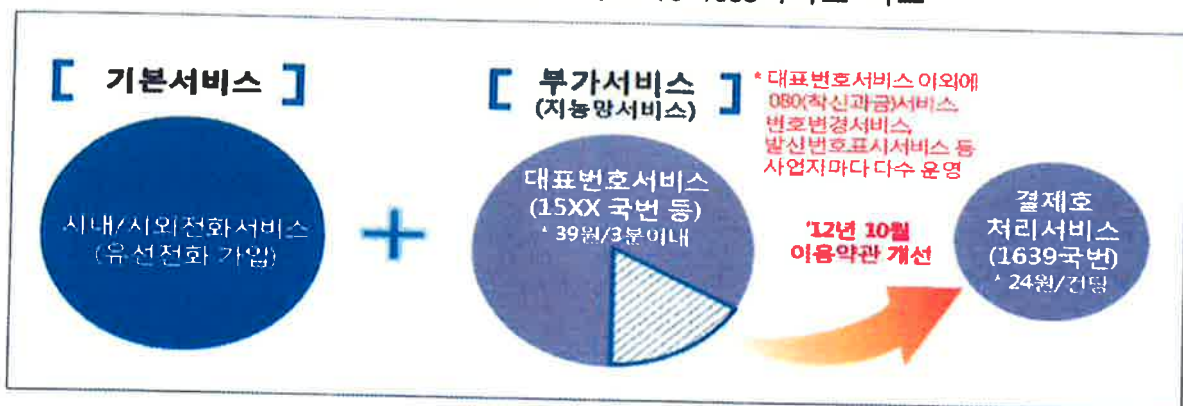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배경

피심인은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지능망서비스인 '대표번호1)서비스(39원/3분, 부가세 제외)'를 이용하던 카드 가맹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12년 9월에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고, '12년 10월에 지능망 이용대가·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을 감안하여 낮은 요금제를 적용한 '결제호처리서비스(24원/건당, 부가세 제외, 이하 '1639서비스'라고 한다)'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하였다.

< 참고 1 > 대표번호서비스 vs 1639서비스 비교



- 1)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의 전화를 실제 수신자(가입자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1588, 1544, 1600 등)로, 회선이용 가입자는 월정액 회선이용료(예, 회선당 8천원~1만1천원 등)를 납부하고, 발신자(이용자)는 대표번호 이용 시 시내·시의 통화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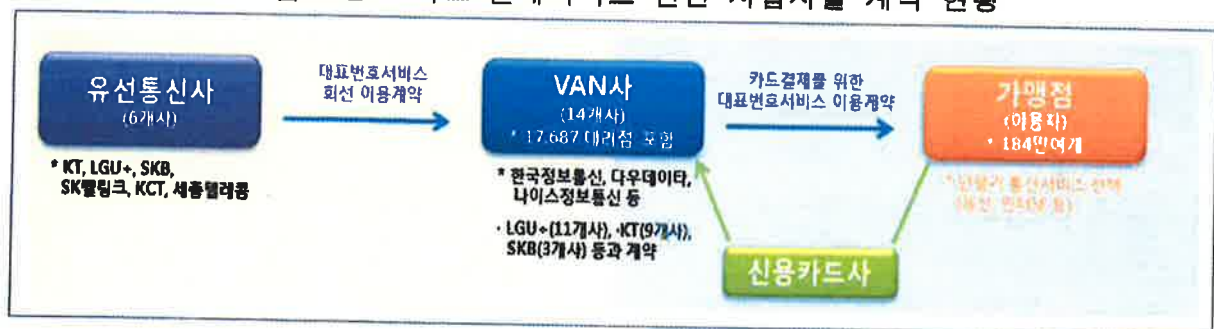
그러나, '1639서비스'가 출시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²⁾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 4. 12일부터 '18. 4. 13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2년 10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가 없는지에 대해 관련 서비스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의 자료 분석과 담당자 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제이티넷 등 4개³⁾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⁴⁾(이하 '밴(VAN)사업자'라 한다)와 체결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12년 10월 이후 약정기간(1년~3년)이 만료된 회선의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연장하면서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이면서 밴(VAN)사업자와 계약되어 있는 카드 가맹점이 종전 '대표번호서비스'(39원/3분, 부가세 제외)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1639서비스'(24원/건당, 부가세 제외)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종전 약정에 따라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연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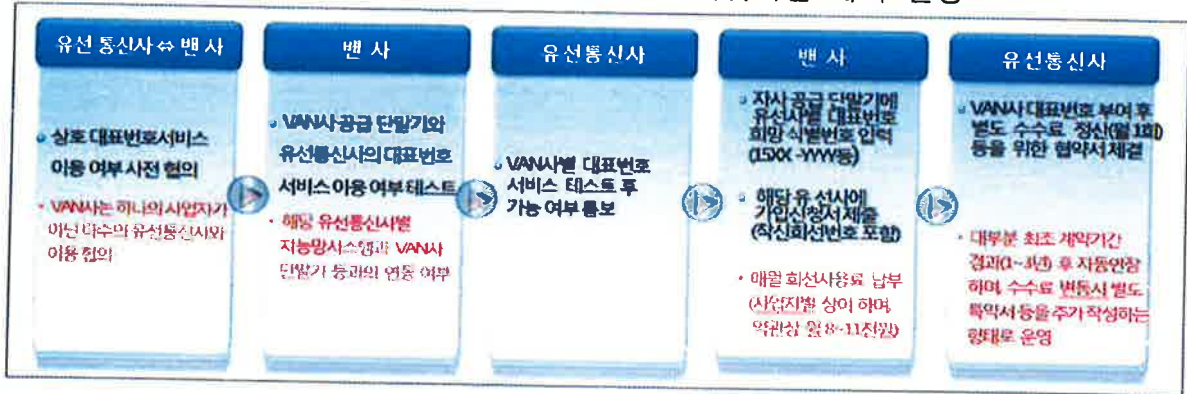
다만, '12년 10월 이후에는 신규 계약을 통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 참고 2 > 카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 2) “영세상인, 유선통화 카드결제 할인요금제 이용 0명...있는 줄도 몰라” (’18.1.17, 서울경제) 등
- 3) (주)제이티넷, (주)다우데이터,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주), 한국신용카드결제(주)
- 4)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로도 신고하여야 함

< 참고 3 > 카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아울러, 피심인은 벤(VAN)사업자와 계약되어 있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관련 정보 조회 시에 발생하는 통화요금은 피심인이 청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카드 가맹점을 관리하는 등의 대가로 벤(VAN)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호 나목은 이용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바목은 약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다만, '16. 1.27일 이전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 4)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4개 밴(VAN)사업자와 체결한 대표번호서비스 회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12년 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이용계약을 연장하면서 '대표번호 서비스' 외에 '1639서비스'에 대해 밴(VAN)사업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1)유선통신사업자의 선택권 없이 밴(VAN)사업자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에 연결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의 매출이 결정되는 구조로 밴(VAN)사업자에 종속된 지위에 불과하며, 밴(VAN)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반 이용자와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에서 예정하는 이용자로 보기 어렵



다고 주장하며, (2)밴(VAN)사업자가 '1639서비스' 이용 시 '대표번호서비스'에 상당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유선통신사업자가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였더라도 선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밴(VAN)사업자의 입장에서는 '1639서비스'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심인의 주장 중 (1)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는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되지 못한다는 배제규정은 없으므로 계약형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밴(VAN)사업자는 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하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표번호 서비스를 입찰하여 제공받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의 주장 중 (2)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번호서비스'와 '1639서비스'는 카드 결제용 단말기에서 특정번호로 전화를 하여 카드결제를 처리한다는 내용과 기능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두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서비스에 이용되는 번호가 다르다는 점,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다는 점, ▲'1639서비스'는 '대표번호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드 결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두 서비스의 내용과 기능이 유사하고, '1639서비스'가 '대표번호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신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표번호서비스'(39원/3분, 부가세제외)와 '1639서비스'(24원/건당, 부가세제외)를 별개의 서비스로 보더라도 이용자가 두 개의 서비스 중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1639서비스')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종전에 가입된 '대표번호서비스'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용자인 밴(VAN)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표번호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과 '1639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구축 비용 등이 들더라도 신규 이용이 가능한 '1639서비스'로 전환하여 더 많은 카드 가맹점을 유지하는 방안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 만료 후에 대체 가능한 저렴한 서비스 및 이용요금 변동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이 주장하는 밴(VAN)사업자와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밴(VAN)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이나 결제용 단말기 관리를 통해 피심인의 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대가로 밴(VAN)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 건의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과는 별개의 건이다. 따라서, 밴(VAN)사업자가 '1639서비스' 이용 시 '대표번호서비스'에 상당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피심인이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였더라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단

피심인이 '12년 10월 이후 밴(VAN)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시내·시외전화를 이용한 카드 결제 시 3분당 39원이 부과되는 '대표번호서비스'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당 24원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나·바목) 【'16. 1. 27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4)】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V. 시정조치

1.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피심인은 밴(VAN)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호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관련 서비스인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가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 또는 고지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 x 10cm 또는 5단 x 9cm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



하고,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내·시외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이용요금이 더 저렴한 ‘결제호처리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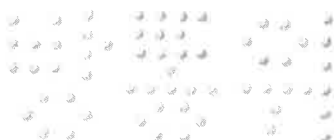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4.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IV. 1. 내지 3.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 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1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경우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부가 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밴(VAN)사업자와 계약한 가맹점이 이용한 ‘대표번호서비스’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심인의 경우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 [별표1]은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피해 중대성 및 범위, 이용자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기준금액 부과기준율 및 중대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유 >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2~3%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1%이내

피심인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종전 보다 저렴한 '1639서비스'를 도입하고 약관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10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전 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1639 서비스' 도입 취지를 왜곡한 점, 관련 서비스 이용자인 카드 가맹점의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금액 부과기준율은 세부기준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부과 기준금액은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원단위 절사)의 100분의 2를 적용하여 1으로 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중사유는 해당사항 없으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7조제1항 [별표3](Ⅱ.3)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감경을 거친 금액 원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 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 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인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인 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원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 부과 내역 >

㉠관련 매출액 (3년 연평균)	㉡기준금액 (㉠의 2%)	㉢필수적 가중· 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10%감경)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20%감경)	최종 과징금 (㉠의 1%,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최종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

VI.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